

## [ 변경대비표 ]

1. 펀드명 : 타임폴리오 TIMEFOLIO 미국나스닥10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
2. 작성기준일 : 2022.09.23
3. 정정사항 : -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정정
  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4. 정정사유 : 당사 ETF 판매 채널 다각화를 위한 파생상품위험평가액 (실제 운용) 한도 축소 (40% → 20%)
5. 효력발생일 : 2022.10.07

### <신탁계약서>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제 16 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 평가액은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40% 이하로 한다.	3.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 평가액은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40% 이하로 한다.	3.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 평가액은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한다.
제 21 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	법 개정사항 반영	<p>⑤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<u>집합투자업자</u>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<u>집합투자업자</u>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	<p>⑤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<u>집합투자업자</u>, <u>집합투자업자로부터 법 제184조 제6항의 업무를 위탁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</u>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<u>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</u>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
		<p>⑥ 수익자는 &lt;생략&gt; 본다.</p> <p>1. 수익자에게 신탁계약서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<u>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내용을</u> 서면, 전화·전신·팩스,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</p>	<p>⑥ 수익자는 &lt;생략&gt; 본다.</p> <p>1. 수익자에게 신탁계약서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<u>신탁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</u> 서면, 전화·전신·팩스,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</p>
제 35 조(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)	용어 통일 (집합투자규약→신탁계약서)	<p>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 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 청구한 것으로 보아 <u>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</u> &lt;이하 생략&gt;</p>	<p>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 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 청구한 것으로 보아 <u>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</u> &lt;이하 생략&gt;</p>
제 45 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법 개정사항 반영	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&lt;추가&gt;</p>	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</p>

## <투자설명서>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												
<b>요약정보</b>															
운용전문인력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											
<b>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									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										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											
가. 운용전문인력	주석 상세 설명 정정	(주 4)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,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. <u>또한 동일 유형으로 분류한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,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여 평균운용성과가 계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</u>	(주 4)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,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.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, 운용 펀드 기준으로 보수차감 전 수익률이며 모자형 구조의 펀드의 경우 모펀드만을 대상으로 계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												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가. 투자대상 (1)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</th> <th>투자대상</th> <th>투자비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⑥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장내파생 상품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험평가 액기준 자산총액 의 <u>40%</u> 이하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투자대상	투자비율	⑥	장내파생 상품	위험평가 액기준 자산총액 의 <u>40%</u> 이하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</th> <th>투자대상</th> <th>투자비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⑥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장내파생 상품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험평가 액기준 자산총액 의 <u>20%</u> 이하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투자대상	투자비율	⑥	장내파생 상품	위험평가 액기준 자산총액 의 <u>20%</u> 이하
	투자대상	투자비율													
⑥	장내파생 상품	위험평가 액기준 자산총액 의 <u>40%</u> 이하													
	투자대상	투자비율													
⑥	장내파생 상품	위험평가 액기준 자산총액 의 <u>20%</u> 이하													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주 1) 정정	주 1)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,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(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)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,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,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며, 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기타비용 비율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.	주 1)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,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(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)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작성 기준일까지의 회계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, 작성 기준일까지의 회계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반기 말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. [직전 회계연도 : ]  ※ 기타비용 종류: 채권평가보수, 펀드평가보수, 펀드결제수수료, 지수사용료, 감사보수, 기타위탁보수(보관대리인보수, 지급대리인보수), 대차거래비용(대차관련수수료), repo 거래비용(repo 수수료), 기타비용(해외거래예탁비용, 해외원천납부세액) 등												

			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분</td><td>금액(직전 회계 기간 중 발생내역, 단위: 원)</td></tr> <tr> <td>-</td><td>-</td></tr> </table>	구분	금액(직전 회계 기간 중 발생내역, 단위: 원)	-	-
구분	금액(직전 회계 기간 중 발생내역, 단위: 원)						
-	-						
주 2) 정정	주 2)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,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.	주 2)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, 작성 기준일까지의 회계기간이 6 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.  ※ 증권거래비용 종류 국내자산: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,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, 장외 ELW/ELS 거래수수료, 현금 중개수수료, 대차 또는 대주, Repo 거래 중개수수료 등  해외자산: 주식, 채권, 선물, 장외파생,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 [직전 회계연도 : ]	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분</td> <td>금액(직전 회계 기간 중 발생내역, 단위: 원)</td></tr> <tr> <td>-</td> <td>-</td></tr> </table>	구분	금액(직전 회계 기간 중 발생내역, 단위: 원)	-	-
구분	금액(직전 회계 기간 중 발생내역, 단위: 원)						
-	-						
주 3) 추가	-	주 3)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 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 [직전 회계연도: ]	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분</td> <td>금액(직전 회계 기간 중 발생내역, 단위: 원)</td></tr> <tr> <td>-</td> <td>-</td></tr> </table>	구분	금액(직전 회계 기간 중 발생내역, 단위: 원)	-	-
구분	금액(직전 회계 기간 중 발생내역, 단위: 원)						
-	-						

### 제 3 부.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다. 집합투자기구 의 자산구성 현황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	---------------

#### 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2.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(신탁업자) 나. 주요업무	법 개정사항 반영	-  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-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-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여부 확인  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-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<u>법시행령 제 269 조 제 4 항에서 정하는 사항</u>
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) 일반사무관리회사 가. 회사의 개요	사명 변경으로 인한 변경	(주)미래에셋펀드서비스	한국펀드파트너스

#### 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	법 개정사항 반영	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	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(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
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